

##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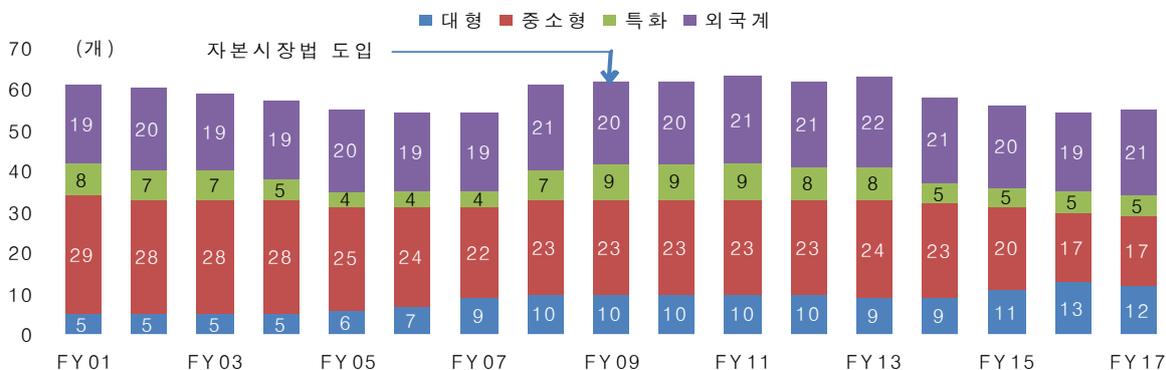
안 성 학 연구위원(shahn0330@hanafn.com)

금융당국은 혁신 성장 지원과 원활한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 인가 정책 정비, 인가 단위 간소화, 인가 및 등록 심사 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대형사 육성 정책에서 증권사간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신규 증권사 진출에 따른 리테일 부문 경쟁 심화로 중소형사의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반면 대형사들은 발행어음 업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증권사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 ■ 금융당국은 혁신 성장 지원과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

-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금융투자 관련 정책이 증권사 대형화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특화 및 전문증권사 유도에는 다소 미흡
  -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사(개) : 5('01)→6('05)→10('09)→8('14)→12('18)
  - 신규 진출 증권사 수는 '08~'09년 10개사였으나 '10년 이후에는 6개사에 불과
- 현재는 세분화된 인가 단위, 경직적 인가 실무 운용으로 영업 확대를 위한 업무 추가와 형태 변경이 어려워 단계적인 성장 전략 추진이 곤란한 측면 존재
-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변경 원활화, 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
  -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시장친화적, 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과 모험 자본 공급 기능 강화가 기본 방향

### ■ 국내 증권사 수 변화



주 : 종합증권사 중 대형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1조원 미만은 중소형사  
 자료 : 금융위원회

■ 1그룹 1증권사,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는 등 인가정책 정비를 통해 신규 증권사 진입과 공모운용사 전환을 유도

- 현재는 신규 증권사 진입시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 인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10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6개 증권사 모두 특화증권사(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로 종합증권사는 전무
  - 1그룹 1증권사 원칙 폐지로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간 M&A 이후 유연한 PMI 전략도 가능
- 사모운용사와 마찬가지로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도 1그룹 복수 운용사 인가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공모시장 활성화를 유도
  - 현재는 사모운용사만 1그룹 복수 운용사 설립이 가능하며 공모운용사는 중복되지 않고 업무 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 복수 운용사 설립을 허용
  - 사모운용사(운용업+일임업 3년 이상)의 공모운용사 전환 기준 중 수탁고 요건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완화하여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을 유도

■ 세분화된 인가 및 등록 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인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인가 단위를 축소하고 등록 단위를 신설하며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시에는 등록제로 개선하여 증권사의 업무 추가 및 변경을 원활화
- 특히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은 신규 진입시에만 인가를 적용하고 추가 업무 확대시에는 등록을 통해 가능하도록 허용

■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방안

구분	주요 이슈	현행	개선
신규 진입 활성화	인가 정책 정비	증권사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하며 1그룹 1증권사만 허용	신규 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 인가 정책을 폐지
		운용사 사모운용사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어 있으나 공모증권사는 업무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 복수운용사 설립만 허용	공모운용사의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기준 중 수탁고 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
기존 회사 업무 추가 및 변경 원활화	인가단위개편	업무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 및 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이후 업무 단위 추가도 인가 등의 절차 필요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이후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개선
신규 및 변경 인가 등록 심사 관행 개선	심사 중단 최대 기간 설정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감독기관 등의 검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방지
투자자 보호 내실화		인가 정책 개선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금융투자업자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한 대비 필요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 다만 투자매매업은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 파생, ATS)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를 인가제로 유지
  -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은 기존 인가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등록 13단위로, 투자매매업은 기존 인가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등록 19단위로 단순화

■ 인가·등록시 본인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에 따른 심사 중단 관행을 개선

-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
  - 현재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심사 중단이 가능
- 인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타 감독기관의 조사·검사로 인한 심사 중단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
  -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 한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겸영 인가시에도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심사 중단 관행을 개선

■ 인가 정책 개선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취소, 파산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정립

-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도산 및 파산 등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
  -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증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증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의 고객별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마련
- 인가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 축소로 증권사 건전성 측정이 부실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대상별 NCR 계산 방식을 조정
  - 일반+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경우 NCR 계산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가중치를 기존 70%에서 100%로 적용하여 산출

■ 이번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기존의 대형사 육성 중심에서 증권사간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

- 지금까지의 증권사 관련 정책은 별도의 특화증권사 육성정책도 있었으나 대형사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형사의 경쟁력 강화를 초래
- 이번 개편안은 증권업권의 높은 경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육성에서 신규 종합증권사 진출 허용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에서 은행 및 생명보험업에 비해 증권업의 주요 비즈니스가 매우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증권사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로 중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

- 종합증권사로의 신규 진출 허용, 인가 단위 축소, 신규 인가에 대한 심사 관행 개선 등은 새로운 증권사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 그러나 증권업의 현재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의 증권업 진출보다는 핀테크 기업의 인터넷전문증권사의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인터넷전문증권사들의 리테일 중심의 영업 참여로 각종 수수료율 인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주 업무가 리테일 부문인 중소형사의 영업환경 악화 예상
- 반면 대형사는 대규모 자본과 풍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IB 및 트레이딩 업무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중소형사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전망
  -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일부 대형사들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문제가 해소될 경우 발행어음 업무를 통한 대형사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 

■ 국내 금융업권의 주요 비즈니스별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르면 HHI<1200은 집중되지 않는 시장, 1200≤HHI≤2500은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은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증권업은 2015~2017년 평균, 은행은 2018년 1분기 기준, 생명보험은 2017년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